

補償金の支給 또는 供託

임 호 정*

I. 序論	V.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에 의하여 增額된 補償金の支給 또는 供託
II. 補償金の支給	VI. 補償金 受領의 效果
III. 補償金の 供託	1. 異議를 留保하지 않고 補償金을 受領한 경우
1. 供託의 要件	2. 異議를 留保하고 補償金을 수령한 경우
2. 供託所	VII. 補償金을 支給하거나 供託하지 않은 경우와 그 效果
3. 供託의 性質	VIII. 結論
4. 瑕疵있는 供託	
5. 瑕疵의 治癒	
IV. 權利가 變動된 目的物에 대한 補償金の支給 또는 供託	

I. 序論

公共事業의 시행자가 公共用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土地收用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강제취득을 위하여 土地收用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있게 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된 補償金¹⁾을 피수용자(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라 함)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수용의 시기에 재결의 내용에 따라 수용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

*본학회 정회원, 감정평가사(동아감정평가법인)

1)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協議取得하는 토지 등에 대한 반대급부도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土地收用法에서와 같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行政上. 損失補償金에 한정하였다.

고, 공익사업의 시행시에 지장이 있는 다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그렇지 못하여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거나, 잘못 지급 또는 공탁하여 외견상으로는 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잘못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사례가 더러 있다.

그럼에도 토지수용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과 그 효과에 대하여 각각 1개 조문씩(제61조와 제65조) 규정되어 있을 뿐, 그 하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이론에 맡길 수 밖에 없으나, 그 이론도 충분하지 못하여, 여기서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과 그의 하자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하자로 인하여 재결이 실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공공용지의 안전한 확보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수용자측에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다투고자 하였으나 이의 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보상금수령을 잘못하여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Ⅱ. 補償金の 支給

기업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토지수용법 제61조제1항). 그러나,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행지체에 따른 불이익으로서 재결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즉, 보상금은 그 채권자인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탁함으로써 지급에 갈음된다.

따라서,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탁할 수는 없지만, 피수용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직접 피수용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여기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

지개발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거나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債券으로 지급할 수 있다(토지수용법 제45조제4항, 제5항 및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6).

Ⅲ. 補償金の 供託

1. 供託의 要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공탁원인)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할 수 있다(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

- 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②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③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 ④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그러나, 위의 ③에 해당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기업자가 불복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한 예정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면 된다(토지수용법 제61조제3항).

그리고,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하되,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26조의2).

이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공탁금을 수령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성명 등을 써야 하는 바(供託事務處理規則 제19조제2항), 여기서 주소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여 써야 하나,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고 불만한 자료가 없거나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를 쓰면 된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뜻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의 공탁에 관하여 土地收用法에서는 공탁의 요건만 규정하여 놓고 있을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탁의 방법은 供託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등기가 잘못된 토지에 대하여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모든 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 수용대상토지 ...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지목이 같고 면적만이 다른 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원고 또는 乙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供託所

보상금의 공탁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民法상의 辨濟供託과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民法 제467조제2항 및 제4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거주하는 현주소인 공탁소(공탁사무를 행하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²⁾

그러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경우 그 현소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

3. 供託의 性質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수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고자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하는 공탁의 성질에 관하여서는 民法상의 辨濟供託과 같다는 견해와 다르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그 성질이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같다고 보는 이유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3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기업자가 자신의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일반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서 하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과 그 목

2) 南基正, 「新體系實務供託叢覽」, 육법사, 1994, pp.151-153.

적 및 요건에 있어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³⁾

둘째, 그 성질이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변제의 목적물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만의 공탁은 그 효력이 없음에 반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액은 기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전부가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재결한 금액이므로 그후 쟁송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증액되어, 그 공탁금이 기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상금의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요건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공탁의 성질을 첫째의 견해에 따라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같다고 다음과 판시하였다(1990. 1. 25 선고, 89누4109 판결).⁵⁾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하는 공탁은 보상금의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가 예정하였던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차액)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술(4.나)하는 바와 같이 그 불복에 따른 쟁송의 절차가 끝난 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쟁송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공탁을 민법상 변제공탁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겠다는 견해도 있다.⁶⁾

4. 瑕疵있는 供託

供託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탁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공탁은 그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액의 일부의 공탁과 수령에 조건을 붙여 한 공탁의 경우이다.

3) 李在性, “辨濟供託金の 留保附 出給請求에 關하여” 『判例月報』 제152호, 판례출판사, 1983. 5. p.151

4) 徐延友, “異義留保없는 供託物의 受領”, 『民事判例研究(VIII)』, 박영사, 1986, pp.92~94 서울고등법원 1982. 3. 3 선고, 80구626 판결.

5)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 1990. 1. 25선고, 89누4109 판결 :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6) 李在性 전계논문, p.151.

가. 供託의 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供託

보상금은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공탁의 요건(공탁원인)에 해당할때 1. 에는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공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이나 그에 갈음하는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에서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라 함은 보상금 자체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보상의 대상이 된 토지 등 물건이나 권리가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된 토지가 압류되었을 때에는 공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뜻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상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一部の 供託

보상금의 지급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탁은 보상금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한하지, 보상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탁원인은, 공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액의 공탁으로 기업자의 보상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나, 보상금 일부의 공탁은 공탁원인 자체가 성립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공탁은 무효가 되어,⁷⁾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용의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대법원에서도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4. 9.11 선고, 84다카781 판결).⁸⁾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효력도 발생할수 없는 것인 바,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변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7) 郭潤直, 「債權總論」, 박영사, 1995, p.519, 金亨培, 「債權總論」, 박영사, 1993, p.830.

李聖煥, 「供託實務提要」, 육법사, 1981, p.56~58.

8)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 1978. 10. 10 선고, 78다1401 판결 ; 1983. 11. 22선고, 83다카161 판결 ; 1984. 9. 11 선고, 84다카 781 판결 ; 1988. 1. 19 선고, 85다카 1792 판결 ; 1992. 7. 28 선고, 91다 13380 판결.

다. 條件附供託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아니한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전체가 무효로 된다.⁹⁾

즉,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행의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의 제공을, 공탁된 보상금수령의 조건으로 붙여서 한 공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공탁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대법원에서도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채권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시 반대급부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¹⁰⁾

... 토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 금 ... 원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매도증서, 구권리증,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사본 4통, 소유권이 국(관리청이 국방부)으로 이전되고,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설정권) 일체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7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 반대급부로서 요구한 위 주민등록사본 4통, 등기부등본 7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에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6. 2. 14 선고, 165다2431, 1966. 4. 29 선고, 65다210, 1969. 5. 27, 선고 69다298, 299,1970. 9. 22 선고, 70다1061 각 판결참조)

또한,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채권자에게 이행의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시기가 지난 후 반대급부의 조건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수용의 시기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0. 10. 14 선고, 80누336 판결).¹¹⁾

... 원판결에 의하면 ... 원재결수용시기인 1978. 12. 20자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선급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는 바, 이 토지수용에 있어서 원고가 위 서류를 선급부할 사유가 없으니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고(피고보조참가인이 1979. 3. 위 공탁을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 해도 그 효력이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위법이 없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9) 郭潤直, 전계서, 519면, 金亨培, 전계서, p830.

10)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11)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재결한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하는 공탁은, 그 불복에 따른 쟁송의 절차가 끝난 후에 청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쟁송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이와 같이 그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쟁송절차가 끝난 후 승소를 조건으로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이 그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공탁원인 난에 그 사유가 기재되나, 지급금지의 명문규정이나 조건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인 심사로서 그 공탁된 보상금의 지급금지를 기대할 수는 없음),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아야,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라고 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5. 瑕疵의 治愈

보상금의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일부의 공탁 또는 조건부공탁은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공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를 공탁공무원이 일용 형식적심사로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형식적 심사로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그 공탁을 일용 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상금의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또는 일부만 공탁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무효가 된 공탁이라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유보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없이 그 공탁된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즉, 공탁금의 수령으로 보상금의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또는 일부공탁이나 조건부공탁의 무효원인인 하자가 치유되어, 그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¹²⁾ 대법원에서도 기업자가 조건을 붙여 공탁한 보상금을 이의유보없이 수령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된다는 전제아래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 원심은 1979. 11. 1일자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장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등을 수용하되(수용시기 1979. 12. 10) 그 손실보상금을 ... 으로 한다고 재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해 1. 2. 3.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시장은 1979. 12. 10 원고들 앞으로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 을 그

12) 李聖煥, 전계서, p.59-60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자인 부산시장의 승락서 각 1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가 1980. 4. 25 위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락서 1부를 반대급부로 한 조건의 삭제신청을 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1980. 5. 3 위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위 공탁은 일반변제공탁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 원고들은 위공탁금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재결금액을 다룰 수 있다 ... 하고 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신청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니 원고들의 ... 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다 ...

그러나,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의 일부 공탁 또는 조건부공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익을 유보하고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 공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익을 유보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3. 8. 24 선고, 92누 9548 판결).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가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 ... 이다.

IV. 權利가 變動된 目的物에 대한 補償金の 支給 또는 供託

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면서 재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므로, 재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진실한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이어야 하나,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될 때마다 그 변동된 사람을 찾아서 재결서에 기재하여 재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제45조제3항). 이 경우 수용목적물의 권리가 변동되어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기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서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업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2). 대법원에서도 사업인정 후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재결당시의 소유자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6. 3. 25 선고, 84

다카2431 판결).

토지수용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 ...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3항은 ... 사업인정 ... 고시 ... 후 소유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같은 법 제6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이를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그리고, 사망한 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 재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그 상속인이 기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한 재결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71. 9. 14 선고, 68구539 판결).

... 사망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처분은 소위 대물적 처분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V.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에 의하여 增額된 補償金の 支給 또는 供託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용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토지수용법 제75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시기를 제외하고 전술한 II 내지 IV에 의하여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된다(土地收用法 제45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단서). 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더라도 이의재결이 실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¹³⁾

13)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9. 6. 13 선고, 88누3963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3956 판결 ; 1989. 11. 14 선고, 89누3526 판결 ;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 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리고, 기업자가 그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소송종결시까지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단서).

VI. 補償金 受領의 效果

1. 異議를 留保하지 않고 補償金을 受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기업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함이 없이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대하여 승복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에서도 이의의 유보없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기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¹⁴⁾

...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첫째의 견해는,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그 자체를 묵시적인 이의의 유보로 보아¹⁵⁾ 별도의 명시적인 이의를

14)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3 판결

15) 李在性, 전계논문, pp.153-156.

徐延友, 전계논문, pp.103-109.

유보할 필요 없이 하여야 대체물을 완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¹⁶⁾

둘째의 견해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재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이기 는 하나, 그와 이의의 유보는 별개의 것으로,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¹⁷⁾

이 두 견해 중에 첫째의 견해에 대하여도 수증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재결된 보상금의 공탁을 변제공탁으로 보는 한 공탁금의 수령은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둘째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에서도 둘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¹⁸⁾

...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

그리고, 당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그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그 재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¹⁹⁾

... 토지소유자가 ...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으로 다투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

2. 異議를 留保하고 補償金을 受領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토지수용위

16) 金庚烈 「토지공법」, 사법행정문화원, 1995, p.192-193.

17) 林護貞 · 金元普, 「新判例補償法」, 사법행정문화원, 1995, p.252.

18)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 1982. 5. 25 선고, 81누277 판결 ; 1982. 7. 27 선고, 81누150 판결 ; 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 1985. 12. 24 선고, 85누595판결 ; 1990. 1. 25 선고, 89누4109 판결

19)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 ;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 1991.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를 유보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재결에 승복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대법원에서도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7. 5. 12 선고, 86누498판결).²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여기서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기업자 또는 공탁공무원(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한함) 누구에게 하여도 되나²¹⁾,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의 형식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재결에 불복” 또는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 등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므로 족하다.²²⁾ 대법원에서도 같은 뜻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7. 2. 24 선고, 86누759 판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文書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口頭로도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뜻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 원심은 ... 기업자 ... 가 ...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들 ... 의 주소를 관할하는 ... 법원에 각 공탁하자 ... 소외인들은 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한 후 수차에 걸쳐 원고 공사 경남지사로 직접 찾아 가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택지과장 ... 과 지사장 ... 에게 공탁된 금원은 보상금의 일부로서 우선 수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다음 ...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때 공탁금출급신청서에는 ... 무지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원고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 경남지사지사장 ... 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여도 되나,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의의 유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20)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85. 8. 20 선고, 83누303 판결 ; 1987. 2. 24 선고, 86누759 판결

2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에 한한다고 보던 종래의 판례를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전원합의부판결)로 변경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4618 판결

22) 林護貞·金元普, 전거서, p.253.

수령당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이 묵시적인 이의유보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뜻으로 대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0. 1. 25 선고, 89누4109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 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 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Ⅶ. 補償金を支給하거나 供託하지 않은 경우와 그 效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은 수용의 시기까지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하여야 하나, 그때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한 경우(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의 일부공탁이나 조건부공탁을 포함)에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토지수용법 제65조). 대법원에서도 같은 뜻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90. 6. 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²³⁾.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의 일부공탁이나 조건부공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수락(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지 않음)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므로,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같이 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갈라져 있다. 첫째, 재결신청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견해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재결의 효력만을 상실시킬 뿐이지, 재결신청의 효력까지를

23) 같은 뜻의 대법원판례 :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 ; 1982. 7. 27 선고, 82누75 판결

상실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재결신청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며, 둘째 재결신청까지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는 재결과 그 기초가 되는 재결신청은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까지도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둘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 규정 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특별법에서 재결신청기간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는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사업인정의 효력까지도 상실하여(토지수용법 제17조), 다시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한 재결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VIII. 結 論

土地收用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요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업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憲法(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正當補償의 일환으로 事前補償의 원칙을 철저하게 이행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취득시기인 수용의 시기까지 목적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되는 공탁을 하도록 하고, 만일 그때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재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土地收用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하여 원칙만 밝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정하여 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성질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보상금의 잘못 산정으로 인한 일부의 공탁, 공사의 시행이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잘못 인식으로 기공승락서·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 등으로 재결뿐만 아니라, 사업인정까지도 실효되어, 공익사업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측에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한 것은 당연히 이의유보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보상금을 수령하나, 그것이 재결에 승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잘못을 줄이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신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필자의 뜻에 따라 이 글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와 이 분야의 이론적인 발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이 글을 끝 맺는다.

〈참고문헌〉

1. 郭潤直, 「債權總論」, 박영사, 1995.
2. 金庚烈, 「土地公法」, 사법행정문화원, 1995.
3. 金亨培, 「債權總論」, 박영사, 1993.
4. 南基正, 「新體系實務供託總覽」, 육법사, 1994.
5. 徐延友, “異議留保없는 供託物の 受領”, 「民事判例研究(VIII)」, 박영사, 1986.
6. 李聖煥, 「供託實務提要」, 육법사, 1981.
7. 李在性, “辨濟供託金の 留保附 出給請求에 관하여”, 「判例月報」, 판례출판사, 1983. 5
8. 林護貞·金元普, 「新版例補償法」, 사법행정문화원, 1995.